##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2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이수진・박선원・송재봉

김준혁 • 송옥주 • 김문수

김정호 • 박홍근 • 민병덕

백혜련 • 남인순 • 서미화

이워택 • 한정애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

는 것임(안 제9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등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9조(보건의료인력의	수급관리)	제9조(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)
① ~ ④ (생 략)	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
		지부장관은 재난상황, 감염병
		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
		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
		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
		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
		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
		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
		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
		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
		면 이에 따라야 한다.